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24 선고 2015가단5272942 판결 [점유회수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9. 8 선고 2017나13594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24 선고 2015가단5272942 판결

전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(선정당사자)B

변론종결 2016. 10. 25.

판결 선고 2017. 1. 24.

주문

1. 원고의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

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바, 피고(선정당사자, 이하 '피고'라 한다) 및 선정자들은 2014. 9. 13. 원고의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하고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, 원고는 점유회수청구로서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.

2. 판단

갑 제3 내지 6, 9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소외 C 주식회사와 소외 D 주식회사 사이에 2007. 4. 5.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(공사도급금액 8,859,600,000원, 부가세 별도)이 체결된 사실, D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2007. 5. 29. 위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 한다)에 관한 하도급계약(계약금액 1,100,000,000원)이 체결된 사실,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07. 8. 30. 주식회사 장수티엔씨에게 재하도급을 준 사실, C 주식회사는 2013. 6. 4.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, 공사대금 중 D 주식회사가 미지급한 금액이 640,000,000원임을 확인하고,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약속하며, 채무원리금 완제시까지 원고의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행사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무승인 및 직불승인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, 피고, 선정자 E, F이 2014. 9. 20. 이 사건 건물 사무실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2015. 7. 8.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(2014년 형제112766호)을 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.

가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,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, 갑 제10 내지 20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영상,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, 피고 및 선정자들이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판사하현우

별지